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1052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20. 9.경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026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는 2020. 7. 9.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2020. 7. 7. 소를 취하하여 종국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3. 11. 19. C와 혼인하였다가 2020. 7. 7.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향후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2021. 2. 1.자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다. 피고는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16. ‘2007.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와 C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C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와 C는 2020.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를 그대로 두어 피고가 이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 이는 재산분할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므로 위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처분문서 등 증거를 위조하였음이 발각되어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C와의 혼인기간 중 공무원인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C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실패를 반복하고 급여생활을 할 때에도 그 수입이 적어 피고가 사업자금, 용돈 등을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처분문서 등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¹⁾,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²⁾,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³⁾.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의 재산분할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것에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부분이 있다⁴⁾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⁵⁾,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재산분할약정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우

1)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참조

3) C의 소득 유무, 그 액수도 확인되지 않는다.

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5) 피고는, 'C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C는 사업빚을 대신 갚아주면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20. 7. 7. 협의이혼에 이르면서 C에게 생활비 등을 융통하여 주었다. 그 후 C는 주거지 임대차보증금도 마련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서 위 돈을 마련하여 주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주기에 C에게 마지막으로 임대차보증금조로 1,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